

학생회칙 일부개정회칙안 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25조(감사독립의 원칙)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감사원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본 회 의결·집행기구 및 타 기구로부터 독립적인 지위를 가진다. 2. <u>감사위원은 다음 각 호의 직을 모두 겸할 수 없다.</u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<u>분회 대표자</u> 2. <u>분회 집행기구 소속 위원</u> 3. <u>분회 자치기구 내부에서 선출된 대표. 단, 동아리연합회의 동아리대표자와 새내기학생회의 새터반장은 예외로 한다.</u> 4. <u>분회 타 전문기구 위원</u> 	<p>제125조(감사독립의 원칙)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감사원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본 회 의결·집행기구 및 타 기구로부터 독립적인 지위를 가진다. 2. <u><삭 제></u>